

2024년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근무할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4월 5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



1. 채용분야

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	근무예정부서	담당업무
방역소독원	4명	보건의료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생해충 현장 방역소독(주택가, 공원, 하수구, 정화조 등) 위생해충 관련 민원처리 기타 방역대응 업무

2. 채용방법

○ 1차전형: 서류심사

평가 항목	광진구 거주기간	방역소독 관련 업무 경력 (공공·민간)	운전면허증 보유 (1종 또는 2종)	취업취약계층 (유공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)	컴퓨터 관련 자격증 (문서 작성, 엑셀 등 PC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)
배점	1년 이상 : 20점 1년 미만 : 10점 관외 : 0점	1년 이상 : 20점 1년 미만 : 10점 없음 : 0점	보유 : 20점 미보유 : 0점	해당 : 20점 해당 없음 : 0점	2개 : 20점 1개 : 10점 없음 : 0점

※ 특정 하한점수(40점 이상)를 통과한 자에 한해 선발

○ 2차전형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평가 항목	자기소개 (태도 및 품행)	사업 이해도	직무전문성	성실성·의지력	소통능력, 의사전달
배점	10 / 15 / 20	10 / 15 / 20	10 / 15 / 20	10 / 15 / 20	10 / 15 / 20

※ 2차전형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한하여 개별통지

3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 : 2024. 5. 1. ~ 12. 31.(8개월)
 - ※ 단, 예산 및 사업진행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근무장소 : 광진구 관내
- 근무시간 : 주 5일 40시간, 1일 8시간 근무(월~금, 9:00~18:00)
 - ※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무 실시 가능
- 보수수준
 - 기본급: 월 2,390,124원(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준용)
 - 휴일수당,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(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시)
- 4대 보험가입: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보험, 건강·장기요양보험

4. 응시 자격 요건

(기준일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- 공고일 기준 전염병,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
- 근로 개시일 기준 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**우대조건:** 방역소독 업무 경력자,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채용공고	○ 공고기간: 2024. 4. 5.(금) ~ 4. 17.(수)
서류접수 (1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수기간: 2024. 4. 12.(금) ~ 4. 17.(수)(09:00~18:00) ○ 접수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문접수: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(☎02-450-6673) ※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 - 전자우편 접수: joyousa19@gwangjin.go.kr - 우편접수: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주소: (우05026)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,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▷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▷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※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면접 시 면허, 자격증 원본 지참이 요구됨 ※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☎02-450-6673로 전화하여 접수 확인, 자필 기재사항(서명 등) 추후 보완 ※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(www.gwangjin.go.kr)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1차 합격자발표	2024. 4. 19.(금) ※ 합격자 개별 통보
면접(2차)	2024. 4. 24.(수) 예정 ※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최종합격자 발표	2024. 4. 26.(금) ※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,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고용 및 계약	2024. 5. 2.(목)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(www.gwangjin.go.kr)에 게시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6. 제출 서류

- ①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- ②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- ③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⑤ 접수기간(4.12.~4.17.) 내 발급받은 등본 1부
-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원본) 또는 학력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⑦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- 근무부서, 재직기간, 직책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(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5호 서식)를 반드시 추가 제출
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⑧ 운전면허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⑨ 기타 자격증 등 증빙 서류

7.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제 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·누락,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면접결과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.
-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보건위기대응팀 (☎ 02-450-66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